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59
----------	-------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오기형 · 문진석 · 정성호
이광재 · 조승래 · 김영환
안도걸 · 윤후덕 · 정태호
김남준 · 김태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u>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u>	제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u> ----- ----- ----- <u>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u> -----.